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잔고”를 “잔액”으로,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(併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작성요령 ⑪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군검찰 사건사무규칙」의 개정)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66호서식 중 “지불액”을 “지급액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」의 개정)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잔고를”을 “잔액을”로, “영치하여야”를 “영치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중 “입회자”를 “참관자”로 한다.

제4조(「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군수용마약류의

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”를 “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입회자”를 “참관자”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, “보존하여야”를 “보존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입회인”을 “참관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명기할”을 “명확하게 적을”로 한다.

제6조(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5항 단서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병역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6호서식(가) 뒤쪽 전투복/전투화 대여 및 교체제도 제1호의 (기본복장) 중 “명찰”을 “이름표”로 한다.

제8조(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비고란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9조(「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」의 개정) 재산형 등에

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 중 “공란”을 “빈칸”으로, “사용하여야”를 “사용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) ① (생략)	제22조(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<u>잔고</u> 를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<u>영치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<u>잔액</u> 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치해야</u> ----- 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마약류의 폐기처분)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·부패·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,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<u>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</u>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<u>입회자의</u>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<u>보고하여야</u> 하고,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·관리하고 이를 2년간 <u>보존하여야</u> 한다.	제10조(마약류의 폐기처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관하에</u> <u>폐기처분해야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참관자</u> ----- ----- ----- <u>보고해야</u> ---- ----- ----- <u>보존해야</u> ---- --.
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)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 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의하지 <u>아니하고</u> 직접 그 직무 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 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<u>통지하여야</u> 한 다. 다만, 가격을 명시할 수 없 거나 <u>명기할</u> 필요가 없을 때에 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	제14조(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) ----- ----- ---- <u>않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지해야</u> ----- -- . ----- --- <u>명확하게 적을</u>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정산원가의 계산) ① ~ ④ (생략)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가 정산 시 직접노무비의 노임단가 는 해당 연도의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한다. 다만, 제4항의 경우에 는 확정되지 <u>아니한</u> 비목이 노 무비인 경우로 한정한다.	제28조(정산원가의 계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.

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이월)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공란에 “○○년도 이월”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<u>사용하여야</u> 한다.	제41조(이월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빈칸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사용해야</u> ----.